

도시가스 공급규정

2016. 1. 7.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규정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235(2016.1.7)>

목 차

제1장 총칙	5
제1조 (목적)	5
제2조 (의무)	5
제3조 (적용)	5
제4조 (용어의 정의)	5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8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8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8
제7조 (승낙의 의무)	9
제8조 (계약의 준수)	10
제9조 (해약)	11
제10조 (계약소멸 후의 관계)	11
 제3장 공사 및 검사	 13
제11조 (공사시행)	13
제12조 (연소기 등의 연결)	13
제13조 (가스계량기)	13
제13조의2 (온압보정장치)	14
제14조 (공사비)	15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17
제15조 (검침)	17
제16조 (계량의 단위)	17
제17조 (사용량의 산정)	17
제17조의2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18

제5장 요금	20
제18조 (요금)	20
제19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20
제20조 (요금의 수납)	22
제21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22
제22조 (10원단위 미만처리)	23
제23조 (이의 신청)	23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24
제25조 (보증금)	24
제26조 (도시가스 요금경감)	25
 제6장 공급	 27
제27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27
제28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27
제29조 (공급중지)	28
제30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29
 제7장 안전	 30
제31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30
제3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30
 제8장 기타	 31
제33조 (문서보관)	31
제34조 (사용장소의 출입)	31
 부칙	 32
 별표	 34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34

[별표2] 시설분담금	35
[별표3] 가스요금표	37
[별표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38
[별표5] 해제 수수료	39
[별표6]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40
[별표7]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41
[별표7-1]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42

서식	43
[서식1]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43
[서식2]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44
[서식3]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신청서	45
[서식4] 도시가스공급 (중지, 중지해제) 신청서	46
[서식5]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47
[서식6]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1	49
[서식7]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2(공동주택용)	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부산도시가스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가스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무)

-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 접수결과 관리 및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당사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합니다)이 허가한 공급권역 내 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Pa(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Nm³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 ②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 ③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 ④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 ⑤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 합니다.
- ⑥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 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 ⑦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 ⑧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 ⑨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 ⑩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 ⑪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⑫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 ⑬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 ⑭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 ⑮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①⑥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 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 ①⑦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 ①⑧ “폐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에서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⑨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이나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신청의 경우 당사는 추후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합니다.
- ④ 당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공급신청 접수·처리결과(수요자 성명 또는 건물명, 소재지, 공급신청 가구수, 공급승낙여부 및 사유, 결정 통지일자 등)을 비치하여 3년간 기록을 유지토록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는 공급신청서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분담금 납부일 또는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수리일을 계약 체결일로 합니다.
-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부산시 고시(제2008-254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 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일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취사전용 시설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승낙의 의무)

- ①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 가스사용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연간 3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단,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체료 일할계산 : 연체원금×연체일수×연체요율(0.24)/365일)

③ 당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또는 온압보정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 온압보정장치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단, 전년 동월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 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 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제9조 (해약)

-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당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가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 ③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 ④ 당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소멸 후의 관계)

- ① 계약기간 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당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 (공사시행)

-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관경이 65mm를 초과하는 인입배관 설치공사에 대해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2조 (연소기 등의 연결)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 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합니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 자 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가스계량기)

-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메인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의 표준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검정교체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스계량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가스계량기에 대해 당사의 비용으로 검정교체를 실시하고 가스사용자로부터 별표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 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 ④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성능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지합니다. 단,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동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성능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 당사는 가스계량기를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 ⑤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 **원격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등)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설치, 교체 등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의2 (온압보정장치)

- 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사용량 측정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8호, 제2009-193호, 제2012-93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의 온압보정장치 표준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③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는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호)에 의거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온압보정장치가 정기검사 결과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하여야 합니다.
- ⑤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온압보정장치의 유지관리 및 정기검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공사비)

-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65mm초과 가스차단장치 설치공사비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공급규정 제4조 제19항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 그 비용부담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비는 **당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공급규정 제4조 제19항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까지로 합니다.
-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응급조치 후 시설의 보강, 개·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⑧ 당해연도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수요자와 협의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 (검침)

-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당사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 취사용은 격월로 할 수 있습니다.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제16조 (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Nm^3 로 하며 검침시 정수부분만 검침합니다.

제17조 (사용량의 산정)

- ①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2항에 의한 사용량(Nm^3)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가중평균열량(MJ/Nm^3)을 곱하여 사용량(MJ)을 산정합니다.
-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단,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용자 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한 산정식에 의해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text{사용량} = \text{검침량} \times \text{온압보정계수}$$

-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자가검침 미이행 등의 사유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 동월 또는 월 사용예정량으로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 ④ 당사는 가스계량기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해당월의 사용량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 ⑥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가스사용자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 = \frac{V_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m^3)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Pa)
 V_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m^3)

$$V = \frac{V_1 \times (10,332 + P)}{10,332 + 100}$$

V = 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m^3)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mmAq$)
 V_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m^3)

제17조의2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 ①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는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 ② 제1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또는 오작동 등으로 보정값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7조의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 ③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가스사용자는 제17조의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제5장 요금

제18조 (요금)

-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 요금은 시장 승인한 별표 3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당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단, 월 215,250,000MJ 이상 사용하는 산업체의 산업용 요금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 요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협의요금 적용 시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단, 요금단가 변경에 따른 일수계산 시에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 ⑥ 가스사용자와 공급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부분까지 전부 검침합니다.
- ⑦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제19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설비용1, 열전용설비용2, 수송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 ①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② 일반영업용1 요금은 주택용, 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및 연료전지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 중 일반영업용2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③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용, 폐기물처리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④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가스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는 하절기만 냉난방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 ⑥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 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설비용1, 열전용설비용2를 적용합니다.
- ⑦ 열병합용1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열병합용2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합니다.
- ⑧ 열병합용2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3호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시스템은 열병합용1을 적용합니다.
- ⑨ 열전용설비용1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⑩ 열전용설비용2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⑪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⑫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 발전소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며, 5MW이상에만 적용합니다.
- ⑬ 별표6의 사회복지시설 중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20조 (요금의 수납)

- ① 당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MJ)에 따라 별표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③ 당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단, 주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 ④ 당사는 주택용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 ⑤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중지로 사용 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⑦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① 요금은 매월 소정 납기 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가스사용자**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는 시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기한 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⑥ 시장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합니다.

제22조 (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23조 (이의 신청)

-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요금을 가스사용자가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당사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월평균 범위 내에서 당사와 가스사용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제25조 (보증금)

- ①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중 요금 체납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 월 **사용예정량**이 43,050MJ/월 이상 가스사용자
 - 2.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 3.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 4. 제3항에 의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연체할 경우

5.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 ② 제1항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 가목(월 사용예정량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월 사용예정량. 단, 업종의 특성에 따라 월 사용예정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업종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일까지로 하며, 가스사용자는 보증보험증권의 만기일 도래 10일전까지 기간연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 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가스요금 징수 사고율이 높아 체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회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3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 ⑤ 당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이자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26조 (도시가스 요금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을 위한 신고 및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①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고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6장 공급

제27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 ① 당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최고열량 - 44.37 MJ/Nm³(10,600 kcal/Nm³)
최저열량 - 41.02 MJ/Nm³(9,800 kcal/Nm³)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5kPa, 최저압력 - 1kPa
- 단, 상기 열량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당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④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호(2012.2.8)에 따릅니다. 단,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8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9조 (공급중지)

-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단,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8조의 계약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른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제30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제7장 안전

제31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 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시장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8장 기타

제33조 (문서보관)

- ① 당사는 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합니다.
-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제34조 (사용장소의 출입)

당사는 검침·점검·조사·가스 사용제한·공급중지 등에 관한 조치, 체납 활동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 칙

① (승인일)

1. 이 규정은 1982년 8월 19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 이 규정은 1983년 3월 4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3. 이 규정은 1983년 10월 13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4. 이 규정은 1984년 6월 29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5. 이 규정은 1985년 12월 13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6. 이 규정은 1987년 9월 9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7. 이 규정은 1987년 10월 16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8. 이 규정은 1988년 11월 1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9. 이 규정은 1989년 8월 30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0. 이 규정은 1991년 6월 10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1.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2.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3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3. 이 규정은 1995년 4월 6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4.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1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5. 이 규정은 2000년 1월 17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6.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7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7. 이 규정은 2002년 9월 18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8. 이 규정은 2003년 7월 23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19. 이 규정은 2004년 6월 29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0. 이 규정은 2005년 6월 27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1. 이 규정은 2008년 5월 26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2. 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3. 이 규정은 2009년 1월 6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4.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5.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6. 이 규정은 2012년 9월 4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7.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8. 이 규정은 2014년 6월 10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29.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30.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③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터 적용합니다.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등 급	G1.6	G2.5	G4	G6	G10	G16	G25
표준 소비량 (Nm ³ /h)	2.5	4	6	10	16	25	40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m³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표준소비량(m³/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3.05MJ/Nm³(10,282kcal/Nm³)으로 합니다.

1. 주택용 수요자: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2. 주택용 외 수요자: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1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별표2] 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여 단일 또는 복수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단, 주택용 이외의 가스발생설비 중 **당사**가 인정하는 예비용 설비 또는 증설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시설분담금

- 납부대상 : 전체 가스사용자
- 부담액 : 기준단가(원/m³) × 표준가스소비량(m³)
- 기준단가 : 22,169원/m³

2. 취사전용시설분담금

-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부담액 : 기준단가(원/m³) × 표준가스소비량(m³)
- 기준단가 : 110,017원/m³ [1세대당 최대 부담액 : 176,020원]

3.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 납부대상 : 100M 당 가정난방용 기준 **20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
 - 100M 당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 합계가 **77m³/h** 미만인 경우로 가정난방용 이외의 가스사용자는 가정난방용 표준가스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부담액 : 기준단가(원/m³) × 표준가스소비량(m³)
- 기준단가(원/m³) : [(표준투자비×배관연장거리×적용률) - (시설분담금 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84,293원/m, 적용률은 **30%**로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에 따른 총 가스사용자의 일반시설분담금을 적용하며,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은 352,580원/세대를 적용합니다.

[참조] 세대별 분담금 기준 단가 (가정용 기준)

세대수 (등급합계)	19 (76등)	18 (72등)	17 (68등)	16 (64등)	15 (60등)	14 (56등)	13 (52등)	12 (48등)
기준단가 (원/㎥)	1,907	8,141	15,109	22,948	31,833	41,986	53,701	67,369

세대수 (등급합계)	11 (44등)	10 (40등)	9 (36등)	8 (32등)	7 (28등)	6 (24등)	5 (20등)	4 (16등)
기준단가 (원/㎥)	83,522	102,906	126,597	156,211	194,286	245,052	316,126	422,735

세대수 (등급합계)	3 (12등)	2 (8등)	1 (4등)
기준단가 (원/㎥)	600,419	955,785	2,021,884

등급 산정 방법

1. 계량기 등급 = 표준가스소비량(J/hr) ÷ 표준열량 (J/Nm³)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가스계량기 등급을 정하고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합니다. (40등급 이하에 한함.)
2. 41등급 이상은 별표1에 의한 등급산정 방법에 의거 등급을 정하고, 산정한 표준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합니다.
3.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상위등급의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분담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부과합니다.
4. 상위등급이라 함은 한 단계 위의 등급을 말합니다.

[별표3] 가스요금표

[단위 : 원/MJ]

구 분		기본 요금	사용량 요금		비 고
			사용량	MJ당 단가	
기본 요금	취사전용	1,000원/월			부가 가치세 별도
	취사·난방용	850원/월			
주택용	취사용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개별난방용	-	516MJ까지	도매요금 + 공급비용	
			516MJ초과	도매요금 + 공급비용	
	중앙난방용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일반용	영업용1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영업용2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업무난방용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산업용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병합용1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병합용2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1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2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수송용		-	MJ당	도매요금 + 공급비용	

1. 도매요금은 도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원료비를 적용합니다.
2. 기본요금은 주택용의 취사용 및 개별난방에만 적용하며 취사전용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용자에게 적용합니다.
3. 취사, 개별난방 겸용의 경우 월 516MJ 이하는 취사용, 월 516MJ 초과
는 난방용으로 적용합니다.
4. 용도별 절기구분은 도매요금 공급규정을 준용합니다.
5.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 발전소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며,
5MW 이상에만 적용합니다.

[별표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단위 : 원/월]

등급	G1.6	G2.5	G4	G6	G10	G16	G25
금액	170	250	420	770	1,290	1,760	2,870
등급	G25 초과						
금액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 계상						

1. 주택용(중양난방용은 제외)에 대한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별표5] 해제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금 액	주택 및 일반용 : 2,000 기타 : 11,000	

1.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별표6]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로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1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12.10.22)
3. 노인복지법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같은 법 제15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7.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시설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별표7]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 계층(우선돌봄 차상위 포함)
6.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별표7-1]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월]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장애인(1~3급)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생계/의료 급여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주거 급여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교육 급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차상위 계층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우선돌봄 차상위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7)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별표 7”의 1호 혹은 5호, 다자녀가구: “별표7”의 6호, 동절기 (12~3월), 기타월 (4~11월)
-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서식1]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 신규 / ☐ 증설)		시공사 :
신청 인 정 보	① 상호(명칭)	[주택용은 기재할 필요 없음]		처리기간 : 7일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공급받는 장소			
	⑤ 신청자주소			
	⑥ 전화번호		⑦ e-mail	@ ※e-mail은 선택사항입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 고객께서는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⑧ 사용용도	주택용 (☐ 공동, ☐ 단독) / ☐ 일반용 / 업무용 (☐ 난방, ☐ 냉방) / ☐ 산업용		

※ 사용조건

1.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승인받은 귀사의 공급규정을 승낙합니다.
2. 공급관에서 분기, 연결, 통합 등 귀사 배관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검침, 점검, 조사사용제한, 공급중지 및 기타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귀사가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사용시설에 출입하여 작업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공급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뒤 7자리 이후 제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의 경우)
2. 도시가스 공급 안내 및 상호협약서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정보") • 사용량, 사용금액, 결제기록, 접속기록, 공급중지기록 ("서비스 이용정보")	• 서비스 가입·심사(신용평가 / 신용정보 조회)·처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및 부대업무 이행·보조 •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 및 서비스 계약 해지 접수·처리 • 서비스 개통 / 장애처리, 품질개선 활동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피콜 등), 경품추첨 및 배송 •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요금 청구·고지·결제 및 추심 • 홈페이지(www.busanga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고지되어 있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요금청구 및 요금관련 업무, 기타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연체정보 제공 및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 제공 (연체 발생 시에 한함)
• 이용기간 : 도시가스 공급신청(변경)일 ~ 해약일 • 보유기간 : 공급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공급이 미완료된 경우 해결 완료일로부터 5년까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http://www.busangas.co.kr/)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공급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법률에 따라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계약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고객 및 예금주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년	월	일	고객명	(인 / 서명)
-----	---	---	---	-----	------------

[서식2]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 회사용

납입자번호

--	--	--	--	--	--	--	--

부산도시가스 SK E&S 콜센터(1544-0009) | 사업자번호 617-81-01562 | (우) 48313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

1. 고객정보		가스 공급과 사용을 위해서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 항목은 필수 작성)	
고객유형	☐ 개인 ☐ 사업자(개인) ☐ 법인 ☐ 공공기관 ☐ 외국인 ☐ 기타()		
고객명(상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서 수령*	☐ E-mail ☐ MMS ☐ 스마트청구서 ☐ 지로	
생년월일(성별)*	(성별 : ☐ 남 ☐ 여)	E-mail 주소	@
연락처*		MMS 수신번호	
2. 자동납부		☐ 은행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인(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신청은행(카드회사)	예금주명(카드소유자)		
계좌번호(카드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카드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 본인 ☐ 부부 ☐ 부모 ☐ 형제 ☐ 자매 ☐ 친척 ☐ 친구 ☐ 동거인 ☐ 기타()			
2-1. 회사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 납부 신청	• 자동납부(이체) 서비스 제공	• 성명(상호), 연락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카드회사 • 카드소유자 성명, 카드번호	수집 이용 동의 일로부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	본인은 자동이체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 날 때까지 개인정보를 자동이체 서비스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약관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인/서명)
3. 세금계산서 신청 (사업자등록증 첨부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
4. 보증 및 담보예치 정보 (당사의 담보예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됩니다.)			
담보예치 정보	☐ 보증금 ☐ 이행보증보험 ☐ 근저당 ☐ 기타() 예치금액 : ₩		
5.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신청인은 자동이체 신청 정보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도시가스 사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busanegas.co.kr) 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시 합니다.			
구분	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수집 / 이용 동의	• 도시가스 사용 / 공급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변경 및 해지 • 사용량 검침, 요금 청구/수납/추심 • 본인확인 및 고객 식별키 발급 • E-mail 청구서 전송 • 고객 요구사항 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감 혜택 제공 •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경품추첨 및 배상을 위한 업무 • 세금계산서 발행 • 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필수) • 고객명(상호), 주소 • 생년월일(성별)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도시가스 사용량, 사용요금 • 연체기록, 결제기록 • 보증금 관련 정보 • 신분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 - (선택) • E-mail주소, MMS 수신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인/서명)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라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상의 내용으로 도시가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서식3]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신청서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 신청서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① 가스사용주소				
② 신청인		③ 연락처		
④ 폐지사유		⑤ 폐지요청일자		
⑥ 비고				
⑦ 계량기현황	기물번호	모델 및 등급	철거 지침	봉인유무

공급규정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중지·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통보자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정보") - 사용량, 사용금액, 결제기록, 접속기록, 공급중지기록 ("서비스 이용정보")	- 서비스 가입·심사(신용평가 / 신용정보 조회)·처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및 부대업무 이행·보조 -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 및 서비스 계약 해지 접수·처리 - 서비스 개통 / 장애처리, 품질개선 활동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피콜 등), 경품추첨 및 배송 -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요금 청구·고지·결제 및 추심 - 홈페이지(www.busanga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고지되어 있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요금청구 및 요금관련 업무, 기타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연체정보 제공 및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 제공 (연체 발생 시에 한함)		
• 이용기간 : 도시가스 공급신청(변경)일 ~ 해약일 • 보유기간 : 공급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공급이 미완료된 경우 해결 완료일부터 5년까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http://www.busangas.co.kr/)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공급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법률에 따라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계약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고객 및 예금주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년 월 일	고객명	(인 / 서명)

[서식4] 도시가스공급 (중지, 중지해제) 신청서

도시가스공급 (중지, 중지해제) 신청서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① 주소				
② 신청인		③ 연락처		
④ 중지·해제 이유		⑤ 중지요청일		
⑥ 중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 계량기현황	기물번호	모델 및 등급	중지·해제 지침	봉인유무

공급규정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중지·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통보자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중지·해지 일자	봉인 담당자	시스템 등록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정보") - 사용량, 사용금액, 결제기록, 접속기록, 공급중지기록 ("서비스 이용정보")	- 서비스 가입·심사(신용평가 / 신용정보 조회)·처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및 부대업무 이행·보조 -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 및 서비스 계약 해지 접수·처리 - 서비스 개통 / 장애처리, 품질개선 활동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피콜 등), 경품추첨 및 배송 -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요금 청구·고지·결제 및 추심 - 홈페이지(www.busanga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고지되어 있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요금청구 및 요금관련 업무, 기타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연체정보 제공 및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 제공 (연체 발생 시에 한함)
※ 이용기간 : 도시가스 공급신청(변경)일 ~ 해약일 ※ 보유기간 : 공급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공급이 미완료된 경우 해결 완료일로부터 5년까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http://www.busangas.co.kr/)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공급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법률에 따라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계약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고객 및 예금주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년 월 일 고객명 (인 / 서명)

[서식5]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용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신청인	① 성명		② 법인명	
	③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시설 개요	④ 명칭		⑤ 사업의 종류	
	⑥ 소재지	(전화:)		
	⑦ 시설장의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설치 연월일		⑩ 입소정원	
시설 설비	⑪ 가스사용시설의 연면적	m ²	⑫ 기타에너지사용시설의 연면적	m ²
	⑬ 단독 가스계량기 설치 유무 (☐ 단독계량기 / ☐ 공동계량기)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산업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고자 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 첨부서류	1.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사본 1부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증빙자료 1부
--------	--

<후면 계속>

개인정보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부산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할인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할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신청인 : 성명, 사용계약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 할인대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 : 성명, 관계	도시가스 요금 할인	영구보관	☐	☐
- 자격증 사본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시가스 경감 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확인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할인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할인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영구보관	☐	☐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할인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할인대상자 : 장애종류, 장애등급	할인대상자의 자격 확인	영구보관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관청)	할인자격 종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할인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

▶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식별정보 이용목적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관청)	주민등록번호	할인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할인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이용목적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관청)	장애종류, 장애등급	할인대상자의 자격 변동 확인	대상자격 조회 기간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할인대상자(본인)

(서명/인)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부산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식6]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고객 정보	성명		접수관리번호	
			(납부고지서상)고객번호	
			고객연락처	(핸드폰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신청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애인(장애종류 : (☐ 1급, ☐ 2급, ☐ 3급)) ☐ 국가유공자(☐ 1급, ☐ 2급, ☐ 3급) ☐ 5.18민주유공자(☐ 1급, ☐ 2급, ☐ 3급) ☐ 독립유공자(☐ 본인,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 차상위계층_자활사업참여자 ☐ 차상위계층_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_장애수당받는자 ☐ 차상위계층_한부모지원가정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가족 ☐ 동거인 ☐ 기타	
		자녀수(다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부산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 도시가스회사 대표이사) 귀하				

<후면 계속>

◇ 구비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 여부	구 분	구 비 서 류
제출 생략 가능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1-3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 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안내사항

- ①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 ②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후면 계속>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산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함
- 고객정보: 성명,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도시가스사 고객코드, 도시가스사용자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 경감대상자(다자녀가구는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의 수, 등급 - 자격내역(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국가(5.18)유공자증,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및 변동 확인(다자녀의 경우 자 또는 손의 수, 실거주 확인)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함
- 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함
- 경감대상자: 장애종류, 장애등급, 차상위종류(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	경감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함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부산도시가스	가스도매사업자, 부산도시가스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종류, 장애등급, 유공자 등급, 자녀(손)수 등	경감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변동 확인 (다자녀 경우 자녀 및 손의 수 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부산도시가스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부산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부산도시가스 지역서비스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상세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busangas.co.kr>)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시 합니다.

[서식7]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2(공동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고 객 정 보	공 동 주 택 명		접수관리번호	
	경감대상자성명		고객번호 (납부고지서상)	
	주 소 (주민등록지)			
신 청 구 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애인(장애종류 : (☐ 1급, ☐ 2급, ☐ 3급)) ☐ 국가유공자(☐ 1급, ☐ 2급, ☐ 3급) ☐ 5.18민주유공자(☐ 1급, ☐ 2급, ☐ 3급) ☐ 독립유공자(☐ 본인,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 차상위계층_자활사업참여자 ☐ 차상위계층_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_장애수당받는자 ☐ 차상위계층_한부모지원가정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	
세 대 주 명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가족 ☐ 동거인 ☐ 기타	
		자녀수(다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위 경감대상자에게 관리비 중 난방비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별표1-1의 경감금액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경감시작은 위 경감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함. - 위 경감대상자에게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부산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 도시가스회사 대표이사) 귀하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구비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 여부	구 분	구 비 서 류
제출 생략 가능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1-3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 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안내사항

①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후면 계속>

[illegible]

※ 변동내역란에 '신규'로 표신된 '경감대상'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월 '경감대상'만 기재. 단, 전월까지는 경감대상이었으나 당월 경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기재하되 '경감대상'부터 '세대주와의 관계'란 까지 줄을 긋고, 변동내역에 '제외'라고 표시

※ 합계는 당월 경감대상을 합산 (당월 경감대상 '제외'자의 경우 합산하지 않음)

1) '신청구분'에는 장애인 0등급, 상이자 0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감대상 기재

2) 변동내역에는 '기존', '신규(전입 등)', '제외'로 표시

<후면 계속>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산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함
- 고객정보: 성명,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도시가스사 고객코드, 도시가스사용자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 경감대상자(다자녀가구는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의 수, 등급 - 자격내역(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국가(5.18)유공자증,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및 변동 확인(다자녀의 경우 자 또는 손의 수, 실거주 확인)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함
- 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함
- 경감대상자: 장애종류, 장애등급, 차상위종류(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	경감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함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부산도시가스	가스도매사업자, 부산도시가스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종류, 장애등급, 유공자 등급, 자녀(손)수 등	경감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변동 확인 (다자녀 경우 자녀 및 손의 수 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부산도시가스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부산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부산도시가스 지역서비스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상세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busangas.co.kr>)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시 합니다.